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0. 9. 9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임동현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
-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취소 등(안 제6조 ~ 제7조)
-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 ~ 제14조)
- 포상(안 제15조)
- 시행규칙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유·초·중등 교육에 활용함으로써,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

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교육기부 사업을 8가지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음. 그 중 제7호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집행청에서 ‘충북진로교육박람회’ 나 ‘충북직업교육종합축제’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교육기부 사업 중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¹⁾. 이에 대해 검토하면, 조례안 제5조제7호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기부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한 것이고, 교육기부박람회 사업의 추진 방식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, 집행청에서 제출한 의견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유관 기관 등과 체결하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8조에서는 교육기부 참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,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교육감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1)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-6508(2020.8.18.)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및 비용추계서 제출

- 안 제16조에서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 아울러, 부칙에서 본 조례안을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,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기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각종 교육기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 교육기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